

##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

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를 삭제한다.

제1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「특허법」 제30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

제11조 중 “「특허법」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”를 “「특허법」 제30조,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”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원한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5조(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경우) ①·② (생략)</u></p> <p>제10조(변경출원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실용신안등록출원(이하 "변경출원"이라 한다)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출원은 특허출원을 한 때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그 변경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제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</u></p> <p>3.·4. (생략)</p> <p>③ ~ ⑧ (생략)</p> <p>제11조(「특허법」의 준용)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는 <u>「특허법」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, 제37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제10조(변경출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「특허법」 제30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</u></p> <p>3.·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~ ⑧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1조(「특허법」의 준용)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는 <u>「특허법」 제30조, 제33조부터 제35조까</u></p>

조, 제38조, 제41조, 제43조, 제44조, 제46조, 제47조, 제51조, 제52조 및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지, 제37조, 제38조, 제41조, 제43조, 제44조, 제46조, 제47조, 제51조, 제52조 및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